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의회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1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추가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임명권자에 “시·도의회 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란 <u>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u> 4. ~ 7.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u>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기구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u>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8조(감사기구 장의 임용) ① ----- ----- ----- <u>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의회 의장</u> ----- ----- -----

현행	개정안
의4 제2항·제4항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u>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u>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 ----- -----.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의회</u>의 장----- ----- ----- ----- ----- ----- -----.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u>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의회</u>의 장----- ----- ----- ----- ----- ----- ----- -----.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의회</u>의 장----- ----- -----

현행	개정안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함)·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및 제5조1)).

□ 개정안은 이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지방의회를 추가하여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지방의회의 자체감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²⁾)에 자체감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은 2021. 1. 12.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³⁾⁴⁾되었고, 「지방공무원법」은 2021. 10. 8.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⁵⁾⁶⁾됨.⁷⁾

2)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3)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주요내용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4)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5)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6)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 다만, 자체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임명권자에 “시·도의회의 장”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지방의회가 추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에 지방의회의 장이 포함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감사결과 통보의무를 부과하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우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제23조8)), 지방의회의 경우 행정안전부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7)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의회법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4호)은 의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기구의 업무로 “의회자치감사”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3조).

제23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 및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9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사무기구 및 사무기구가 그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출연하는 단체를 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하여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하는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의회자치감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9. 의회자치감사업무와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8) 제23조(감사결과와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

장관을 경유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5

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